

1. 헌법의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 조문의 외형상 변화는 없으나, 규범현실에 있어 헌법 조문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③ 우리나라 역대 헌법에서는 개정이 금지되는 조항을 명시한 적이 있다.
- ④ 헌법개정한계규정설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는 견해이다.
- ⑤ 헌법의 개정은 헌법변천에 제동을 걸고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높임으로써 헌정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이른바 헌법변천의 한계적 기능을 맡고 있다.

2.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③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④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현행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③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하여야 하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제1순위 권한대행자가 된다.

4. 현행 헌법상 인정되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ㄷ.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ㄹ.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ㅁ.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ㄱ, ㄹ, ㅁ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유·무죄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 ③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합의부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⑤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6. 제도적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도 있으며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보장에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듯이 제도적 보장에도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중앙정치의 산물인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
- ④ 국유재산의 보전과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에 반한다.
- ⑤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해당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직업공무원제도상의 공무원의 신분보장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②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 외의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8.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는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③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입법자가 한의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모두 금지하여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까지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9.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정무직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특정직 공무원이 있다.
- 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ㄷ.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ㄹ.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 ②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③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행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⑤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가지이다.

11.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잉금지원칙의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헌법 제37조제2항뿐 아니라 국가긴급권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 ③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규정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 내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
- ④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지만, 이때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② 이동전화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 사용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③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④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姓)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⑤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를 대비하여 미리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환자의 결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13. 법률과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해석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권한이다.
- ③ 공법적 기관의 정관 제정주체가 사실상으로는 행정부에 해당할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것을 의도하여 정한 자치조례라 할지라도 법령이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비의 경우 국회의 사전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대통령이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예산안제안권은 정부와 국회가 가지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 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1개월 동안의 잠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15.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
- ②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④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400명으로 한다.
- 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6.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의료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라고 정의한 구「영화진흥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 및 구「근로기준법」 제55조 중 ‘통상임금’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7.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란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⑤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동행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18.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의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학교법인이 그 재산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19.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④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즉 국회의 의사절차·입법절차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자율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20. 헌법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관해서만 가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도 달리 가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치분이 허용된다.
- ②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사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중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 ④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 ⑤ 조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1.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과 통일조항(제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우리 헌법이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 ③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와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왕래’ 관련 죄는 각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 ④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할 때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그 접촉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평화통일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 ②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③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은 직접 흡연으로 인한 폐해라는 위험상황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④ 사산된 태아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매우 중대한 기본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가 모두 고령으로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 기본권 침해구제의 절박성이 있고, 구제가능성이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23.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②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대통령령안은 행정입법사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24.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위헌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헌법 제117조제1항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 정답 ①

- ① (×) 헌법의 개정이 아닌 헌법의 변천이다.
- ②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 ③ (○) 2-4차 개정헌법
- ④ (○)
- ⑤ (○)

2. 정답 ①

- ① (○)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0.2.25, 2008헌마324).
- ② (×)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8.30, 2000헌바36).
- ③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0.7.29, 2006헌바75).
- ④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다(헌재 2006.10.26., 2005헌가14).
- ⑤ (×)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헌재 2008.6.26, 2005헌마506).

3. 정답 ③

- ①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 제81조).
- ②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 ③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4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
- ④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 ⑤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4. 정답 ②

- ㄱ.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 ㄴ. (×)
- ㄷ.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 ㄹ.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口. (×)

5. 정답 ③

① (○)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②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③ (×)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6. 정답 ⑤

① (×)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재 1997.4.24, 95헌바48).

② (×)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하여, 제도적 보장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헌재 1997.4.24, 95헌바48).

③ (×) 후보자의 계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계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앞서 본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시취지와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2013.11.28, 2013헌마17).

④ (×) 국유재산의 보전과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 처분이라는 입법 목적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인 입법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4.29, 96헌바55).

⑤ (○)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전출 전입동의가 있다는 오로지 그 한 가지 요건

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시킬 수 있다고 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물론 그 공무수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아가 그 소속 정당 내지 정치적 세력의 교체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 위험이 다분하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엮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헌재 2002.11.28, 98헌바101).

7. 정답 ⑤

- 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재 2003.5.15, 2002헌마90).
- ②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5.29, 94헌마33).
- ③ (○)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10.28, 2002헌마328).
- ④ (○)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2.23, 2011헌마123).
- ⑤ (×)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8. 정답 ②

- ① (○)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15.5.28, 2013헌가7).
- ② (×)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5.13, 92헌마80).
- ③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을 위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3.9.26, 2012헌마365).
- ④ (○)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의료인이라는 자격의 내용 형성에 관련된 것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입법자가 한의사제도를 형성하면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모두 금지하여 의료기기 사용까지도 금지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2.28, 2011헌바398).
- ⑤ (○)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0.29, 2008헌마635).

9. 정답 ⑤

ㄱ.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ㄴ.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ㄷ. (○)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

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정답 ①

①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제102조 제2항).

② (○)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③ (○)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④ (○)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헌법 제110조 제1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헌법 제110조 제2항).

⑤ (○)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11. 정답 ③

① (○)

② (○)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8.7.16, 96헌바35).

③ (×)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헌재 1996.2.16, 96헌가2).

④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의 그리고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면,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2003.6.26, 2002헌바3).

⑤ (○)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됨으로써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생명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헌재 2010.2.25, 2008헌가23).

12. 정답 ④

① (×)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8.23, 2010헌바402).

② (×) 한시적 변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0. 15.자 이행명령이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3.7.15, 2011헌마63).

③ (×)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점,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 또는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④ (○)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05.12.22, 2003헌가5).

⑤ (×)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13. 정답 ④

①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 1995.4.20, 92헌마264).

②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헌재 1997.7.16, 96헌라2).

③ (○) 공법적 기관의 정관 규율사항이라도 그러한 정관의 제정주체가 사실상 행정부에 해당하거나, 기타 권력분

립의 원칙에서 엄격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1.4.26, 2000헌마122).

④ (×)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4.25, 96추244).

⑤ (○)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판 1999.9.17, 99추30).

14. 정답 ②

①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 제2항).

② (○)

③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헌법 제54조 제1항).

④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⑤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제54조 제3항).

15. 정답 ⑤

①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② (×)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③ (×)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16. 정답 ③

①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5.26, 2003헌바86).

② (○)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영화진흥법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8.7.31, 2007헌가4).

③ (×)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4.3.27, 2012헌바55).

④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가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4.8.26, 2003헌바81).

⑤ (○)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 및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중 ‘통상임금’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4.8.28, 2013헌바172).

17. 정답 ③

① (○) 청구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로서,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이송 당시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수갑 2개가 채워진 상태에서 4시간 정도에 걸쳐 이송되었다.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등에 비하여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그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7.26, 2011헌마426).

② (○)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개인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이를 문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출한 것의 등가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기재행위 역시 “진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12.22, 2004헌바25).

③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 우선적으로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에서 채취하도록 하고 위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밖에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신체부분, 분비물, 체액의 채취를 하게 하는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채취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면서 실무상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나아가 이 사건 채취조항들에 의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서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저하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취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8.28, 2011헌마28).

④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12.29, 2008헌가13).

⑤ (○)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6항·제7항, 제18조 제2항이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18. 정답 ④

①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② (○)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9.25, 2007헌가1).

③ (○)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10.26, 2004헌마13).

④ (×)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1.1.18, 99헌바63).

⑤ (○)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천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으로 인하여 학부모의 ‘사립학교선택권’이나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9.4.30, 2005헌마514).

19. 정답 ④

① (○)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국회법 제18조).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② (○)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국회법 제77조).

③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7조 제1항).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 제90조 제2항).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 제90조 제3항).

⑤ (○)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1997.7.16, 96헌라2).

20. 정답 ①

①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7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5조).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만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헌재 2000.12.8, 2000헌사471).

②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4.6.24, 2001헌바104).

③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④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3.25, 2007헌마933).

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조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1. 정답 ④

- ① (○)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7.20, 98헌바63).
- ② (○)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헌재 2005.6.30, 2003헌바114).
- ③ (○)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서의 “잠입·탈출”과 남북교류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에서의 “왕래”는 그 각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두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헌재 1993.7.29, 92헌바48).
- ④ (×)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6.30, 2003헌바114).
- ⑤ (○)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7.20, 98헌바63).

22. 정답 ③

- ① (○)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선언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헌재 2008.7.31, 2004헌바81).
- ② (○)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헌재 2008.12.26, 2008헌마419).
- ③ (×)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4.30, 2012헌마38).
- ④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 비난할 수 없다(헌재 2008.7.31, 2004헌바81).
- ⑤ (○)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

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

23. 정답 ④

- ①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 ②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③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규정 제6조 제1항).
- ④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4조).
- ⑤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24. 정답 ④

- ① (×)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②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③ (×)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④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⑤ (×)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헌재 1997.12.24, 96헌마365).

25. 정답 ①

-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 · 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
-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 ③ (○)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
- ④ (○)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

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입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 한 바에 따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헌재 2002.10.31, 2001헌라1).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